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							
연결사업연도	<u> </u>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	호		
1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							
	금 액						
① 기업업무							
② 기준금액 액	초과 기업업두	무추진비 중 신용카드	등 미사용으로	인한 손금불산입			
	 업무추진비 ត	#당 금액(①-②)					
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①-②) 1,200만원 (중소기업 3,600만원)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() 12							
일반기업 업무추진비 한도	총수입금액	100억원 이하의 금 35/10,000) 100억원 초과 500억 사업연도분은 25/10,					
	기준	500억원 초과 금액× 10,000)				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 35/10,000) 100억원 초과 500억 사업연도분은 25/10,					
		500억원 초과 금액× 10,000)					
	⑦ 수입금액 기준	(5-6)×20(10)/100					
		8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(④+⑥+⑦)					
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하도	9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			
인 그 (「조세특례제 한법」제136 조제3항)							
⑪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(®+⑩)							
⑫ 한도초과액(③-⑪)							
⑬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(③과 ⑪ 중 적은 금액)							
2.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							
14) 연결법인명					⑨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(⑱×⑳/⑲)		
		_					

작성 방법

- 1.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에는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⑥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2. ② 기준금액*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 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②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* 기준금액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
 - 경조사비: 20만원
 -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: 3만원
- 3.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(4~8)
-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.200만원, 중소기업은 3.600만원을 적용합니다.
- 나.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-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+⑥+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마.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%를 적용합니다.
- 바.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기업업무추진 비 한도액에 50%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4.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~⑩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- * 2016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%에서 20%로 확대
- 5.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"0"으로 적습니다.
- 6. ⑯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.
- 7. ⑰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8. ®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에는 "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을)]"의 각 연결법 인별 ⑤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서 ②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

※ 귀속의 식성당답을 낡고 식성하시기 마랍니다.						
연결사업연도		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

1. 수입금액명세

①연결법인명	②사업자 등록번호	③수입금액총액	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	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	⑥일반 수입금액 (③-④-⑤)
합 계					

2.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계산

	⑧사업자 드로버 5	⑨기업업무추진비계상액	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					⑤기업업무
⑦연결법인명 8사업자 등록번호			⑩합계	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			14)시적시용 경 비	추진비 해당 금
	(10+15)	(11) + (14)	⑪계 (⑫+⑬)	⑫기업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	⑬사적사용 경 비	(연결법인 지급액 제외)	액 (⑨-⑩)	
한미	계							

3.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

16연결법인명	⑰사업자 등록번호	(8)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	⑩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	⑩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(⑱-⑲)
합 계				

작성방법

- 1. ③수입금액총액,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,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, ⑥일반수입금액란: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(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)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2. ④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: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「법인세법 시행 링」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- 3. ⑤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4. ⑨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란: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5. (๑)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: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(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).
- 6. (18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란: 각 연결법인별로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 23호서식(을)]"(16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7. ⑲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: ⑱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.